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 시 보

www.namwon.go.kr

<b>선 람</b>	기관·의 장

제31호      2016. 7. 22(금)

## 고시

- 남원시 고시 제 2016-107 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1

## 공고

- 남원시 공고 제 2016-929 호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
- 남원시 공고 제 2016 - 944 호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0
- 남원시 공고 제 2016-945 호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0
- 남원시 공고 제 2016-942 호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외 1건 폐지(안) 입법예고 ..... 59
- 남원시 공고 제 2016-952 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7

<b>회 람</b>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6 -107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토지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적 (㎡)
성 명	주 소	시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	
오**	남원시 대강면 입암*길 *-**	남원	대강	입암	산120	임야	3,946	3,946
이**	남원시 대강면 수촌*길 **	남원	대강	수홍	산54	임야	49,389	4,500
이**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	남원	대강	사석	산73	임야	10,711	4,990

- 5. 사업기간 : 2016. 07. ~ 2017. 06. 30.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2016 - 929호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 남 원 시 장

###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공문서 결재 과정에서 도장이 점차 사라지고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각종 법률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을 인정하고 있어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보공개 청구방법 변경 (안 제7조)
  - 기명날인→기명날인 또는 서명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 3. 참고사항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그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를 “남원시”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9조제1항”으로, “정보에 대하여는”을 “정보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를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및 연락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대면하여”를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앞에서”로, “담당공무원 등은”을 “담당공무원은”으로,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를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 전단 중 “그 신청내용”을 “신청내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민원처리업무”를 “민원처리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라”로, “받은때에는”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없는 때에는”를 “없을 경우에는”로, “이내에”를 “이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공개청구된사실을제3자”를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명시하여”를 “밝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즉시 처리가 가능한정보의공개절차)”를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정보는 제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개는지정된일시및장소”를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열람의형식으로공개함에있어원본에훼손등의우려”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로, “상당”을 “타당”으로, “때에는 당해”를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

우에는”으로, “받고자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방법으로”를 “등의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대하여 자신과”를 “자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비공개요청”을 “비공개 요청”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을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인”을 “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제2호 중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9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청구인 또는 기타”를 “청구인 또는 그 밖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심의위원의 해촉)”을 “(심의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2조 제3호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을 “따라 열람 · 공고 · 고시 · 예고 또는 등본 · 초본”으로 한다.

제24조 중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남원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따라</u> ----- ----- ----- ----- - <u>목적</u>-----.</p>
<p>제4조(시의 책무) <u>시장</u>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시의 책무) <u>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u>쉽게</u> ----- ----- ----- ----- --.</p>
<p>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과 <u>시 홈페이지</u>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 ----- ----- ----- ----- ----- <u>남원시</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p>	<p>제6조(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 ① -----</p>

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대면하여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보공개청구의 취하)

-----.  
-----  
-----  
- 제9조제1항  
정보는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  
-----  
-----  
-----  
----- 다음 -----  
----- 적은 -----  
-----.  
-----.

1. -----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및 연락처-----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앞에서 ----- 담당공무원  
은 -----  
-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보공개청구의 취하) -

청구인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취하방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 6. (생략)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  
 ----- 신청내용 -----  
 -----  
 -----  
 -----  
 -----  
 -----

제8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  
 -----  
 -----  
 -----  
 -----  
 ----- 따라 -----  
 -----  
 ----- 예외로 한다.

1. 해당 연도 -----  
 -----

2. ~ 6. (현행과 같음)

② -----  
 -----  
 -----  
 ----- 경우에는 -----  
 -----  
 -----  
 ----- 따라 -----  
 ----- 예외로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8.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생략)

제9조(정보공개여부 결정) ① 집행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사실을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7. 민원처리 업무-----  
-----  
--

8. 그 밖에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정보공개여부 결정) ① ---  
----- 제7조에 따라 -----  
----- 경우에는  
-----  
-----  
-----

----- 없을 경우에는 -----  
-----  
----- 이내의 -----  
-----  
-----

② -----  
-----  
----- 경우  
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  
-----  
-----

청취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유와 불복방법·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2. 3. (생략)

제11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신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여, 청구

-----.

③ ----- 제6조에 따라 -----  
-----  
----- 경우에는 -----  
-----  
-----  
-----  
- 밝혀 -----  
-----.

④ -----  
-----  
----- 경우에는 -----  
-----  
-----  
-----.

제10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① -----  
-----  
----- 행정정보는 -----  
----- 제9조에 따른 -----  
-----  
-----.

- 1. ----- 따라 -----  
-----
- 2. 3. (현행과 같음)

제11조(공개방법) ① -----  
-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 -  
-----  
-----

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  
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  
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  
해 정보의 사본·복제물로 공개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제5항의 규정 및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  
하지 아니한 행정정보 공개방법  
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⑦ 집행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  
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편요금(우편으로 송  
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에 소  
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  
로 한다.

② (생략)

-----  
-----  
-----.

② ----- 열람의 형식으  
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 타당-----  
----- 경우에는  
해당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 -----  
-----  
-----  
-----  
-----  
-----  
-----  
-----  
-----.

⑦ -----  
- 경우에는 -----  
----- 그 밖의 -----  
-----  
-----.

제12조(비용부담) ① -----  
-----  
----- 한정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수료 징수 방법은 공개형태가 직접방문인 경우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즉시 공개)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 증지를 붙이고 소인하며, 온라인 및 우편, 팩스로 공개자료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납원시 세외수입계좌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방법으로 징수가 가능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1. 2. (생략)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제9조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③ -----  
-----  
-----  
----- 경우에는 -----  
-----  
-----  
-----  
----- 받으려는 -----  
-----  
----- 등의 방  
법으로 -----.

④ ----- 규정도 -----  
----- 어느 하나 -----  
-----  
-----.

- 1. 2. (현행과 같음)
- 3.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⑤ 제4항에 따른 -----  
----- 경우에는 -----  
----- 붙여야 -----  
-----.

제13조(이의신청) ① -----  
-----  
-----



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집행기관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6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및 보건소장을,

-----  
 ----- 경우에는 -----  
 -----  
 -----  
 -----  
 -----  
 -----  
 -----  
 -----  
 -----.

③ ----- 제2항에 따른 -----  
 -----  
 -----  
 -----.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  
 - 영 제11조에 따라 -----  
 -----  
 -----.

제16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  
 - 1명을 포함하여 7명 -----  
 -----  
 -----  
 --- 호선(互選)한다.

② -----  
 -----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 전문가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략)
-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시 정보 공개의 여부에 관한 사항
-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있을 경우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  
-----  
----- 3명 -----.

③ -----  
----- 한 번만 -----  
----- . -----  
--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 --  
-- .

제17조(심의회의 기능) -----  
----- .

- 1. (현행과 같음)
- 2. ----- 제21조제2항에 따른 -----  
-----
- 3. 그 밖의 -----  
-----

제19조(수당 등) -----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제20조(의견청취) -----  
-----  
-- 청구인 또는 그 밖의 -----  
----- .

제22조(심의위원의 위촉 해제)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위촉 해제-----.

-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  
----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본·초본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  
-----.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공고 제2016 - 944호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 남 원 시 장

###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체험휴양시설의 개장 및 휴장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개장 및 휴장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1항)
-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6조제4항)
-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체험휴양시설 내 행위제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산림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3)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과(☎063-620-5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7.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산 립 과 장

## 1. 개정이유

-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체험휴양시설의 개장 및 휴장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개장 및 휴장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1항)
-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6조제4항)
-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체험휴양시설 내 행위제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간 : 2016. 7. . ~ 2016. 8. .(20일간)
    - 결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2”를 “299”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점점 및 그밖에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을 “점점 및 그 밖에 사유로 휴장할”로, “전에 휴장 내용을 체험·휴양 시설”을 “전에 체험·휴양시설”로, “사전 공고하여야”를 “공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하여 휴장하는”을 “휴장하는”으로, “않을”을 “아니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사람에게는입장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하인 자 및”을 “이하 또는”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제6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6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제7조제1항 본문 중 “사람에 대해서는”을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액 환불”을 “전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액 환불”을 “전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80퍼센트 환불”을 “8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0퍼센트 환불”을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아니한다”를 “경우 : 미 반환”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불은”을 “반환은”으로, “환불하는”을 “반환하는”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자는”을 “시장은”으로, “사유 발생 즉시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공고하여야하며”를 “공고하여야 하

며,”로, “발생시 그리하지 않을”을 “발생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휴양시설 내외에”를 “이용객들을 위하여”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상(변상)에 관한”을 “손해배상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체험·휴양시설은 시장이”를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을 “체험·휴양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을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를 “선정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위탁 사용료 결정 등)”을 “(위탁 사용료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를 “변경할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수탁자가 제1항”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관리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이행사항을 지도 및 감독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이 경우 수탁자”를 “수

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시장은 제2항”으로, “시정하여 할 내용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할”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제19조제1항제1호를 같은 항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제1항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이 조례”를 “수탁자가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탁자의”를 “수탁자가”로, “미비하다”를 “없다”로 한다.

제20조 중 “맞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체험·휴양시설”을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체험·휴양시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관리 시”를 “관리할 경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입 장 료 (제6조 관련)

구 분	입장료 (원)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체험·휴양 시 설	2,000	1,500	1,500	1,000	1,000	500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체 : 20명 이상

[별표 2]

## 시 설 사 용 료 (제7조 관련)

구 분	기준	인실	사용료(원)		비 고
			주중	주말	
트리하우스	1일	3명 이하	100,000	150,000	
	1일	4명~6명	120,000	170,000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4시간	8시간	1일	
2층 교육장	100,000	140,000	210,000	· 냉·난방 시설 1회 30,000원 · 1회 기준 4시간 이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치) 남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체험·휴양 시설(이하 “체험·휴양시설”이라 한다)은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길 302 일원에 둔다.</p>	<p>제2조(위치) ----- ----- ----- ----- 29 9 -----.</p>
<p>제4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휴양 시설은 <u>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1. <u>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및 설·추석 당일날</u></p> <p>2. <u>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u>체험·휴양시설 점검 및 그 밖에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휴장 내용을 체험·휴양시설 게시판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u>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4조(개장 및 휴장) ① ----- ----- <u>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② ----- ----- <u>점검 및 그 밖에 사유로 휴장할 -----</u> ----- <u>전에 체험·휴양 시설 -----</u> ----- <u>공</u> <u>고하여야 -----.</u> ----- ----- <u>휴장하는 -----</u> ----- <u>아니할 -----.</u></p>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3. 만 6세 이하인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 4. ~ 8. (생략)

<신설>

<신설>

9. (생략)

10. (생략)

제7조(시설 사용료 등) ① 체험·휴양시설을 방문하여 트리하우스 및 2층 교육장(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에는 -----  
-----.

제6조(입장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다음 -----  
----- 사람에게는 입장료-----  
-----.

- 1. 2. (현행과 같음)
- 3. ----- 이하 또는 -----  
----- 사람
- 4. ~ 8. (현행과 같음)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11. (현행 제9호와 같음)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7조(시설 사용료 등) ① -----  
-----  
-----  
-----  
----- 사람에게 -----  
-----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체험·휴양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제8조(시설 사용료 면제 등) 시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이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  
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  
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  
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  
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

제10조(행위제한) ① 체험·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5.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체험·휴양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생략)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

제10조(행위제한) ① <삭 제>

<삭 제>

제11조(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환불

2. 사용일 5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 환불

3. 사용일 2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퍼센트 환불

4.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환불

5. 사용 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③ 환불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  
-----  
----- 전액

2. -----  
-----  
----- 전액

3. -----  
-----  
----- 80퍼센트

4. -----  
----- 50퍼센트

5. -----  
-----  
----- 경우: 미 반환.

경우에는 전액 반환-----

③ 반환은 -----  
----- 반환하는  
-----.

제12조(사용제한)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생략)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체험·휴양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휴양시설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배상(변상)에 관한 세부사항

-----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 홈페이지 -----  
----- 홈페이지 -----  
----- 공고하여야 하며, -----  
----- 발생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  
----- 이용객들을 위하여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  
-----  
----- 경우에는 -----  
----- 상응하는 -----  
-----.

② 손해배상에 따른 -----

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운영 및 위탁) ① 체험·휴양시설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그 밖에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수탁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  
-----  
-----.

제1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을 -----  
----. ----- 체험·휴양시설-----  
-----  
-----  
-----  
-----  
-----  
-----.

② 위탁기간-----  
-----.  
----- 경우에는 -----  
-----.

③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  
-----  
-----  
----- 붙여  
-----  
-----.

④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  
-----

선정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사용료 결정 등) 위탁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할 경우에는 -----  
-----  
-----.

제16조(위탁 사용료 결정)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변경할 경우에 -----  
-----.

③ 수탁자가 제1항-----  
----- 경우에는 -----  
-----.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이행사항을 지도 및 감독 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에게 -----  
-----  
-----  
----- 수탁자 -----  
-----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 할 내용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 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생략)

제20조(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체험·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맞는 서류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세입조치) 체험·휴양시설의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관리 시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

③ 시장은 제2항-----  
--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 하여야 -----.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  
-----  
-----  
-----

--- 할 -----.

- 1.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제18조-----  
-----

<삭 제>

- 3. 수탁자가 ----- 없다-----  
-----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서류 등의 비치) -----  
-----  
- 따른 -----  
-----.

제21조(세입조치)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체험·휴양시설-----  
---. ----- 관리할 경우  
-----.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  
 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원시 사  
 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  
 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  
 법」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  
 - 필요한 사항은 -----  
 -----.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공고 제2016 - 945호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 남 원 시 장

###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 전시관 입장료와 체험시설 이용료를 구분하고 규제 완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편의제공 및 전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체험시설 이용료 조항 신설
- 도로명 주소 수정(안 제3조)
- 전시관 휴관 조항 수정(안 제5조)
  - 월요일 휴관,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8조)
-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전시관 내 행위제한 규정 삭제(안 제9조, 제13조)
- 체험프로그램 운영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3. 참고사항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산림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3) 및 직접방문 등

###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과(☎063-620-5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07. .  
 제출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 1. 개정이유

- 전시관 입장료와 체험시설 이용료를 구분하고 규제 완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편의제공 및 전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체험시설 이용료 조항 신설
- 나. 도로명 주소 수정(안 제3조)
- 다. 전시관 휴관 조항 수정(안 제5조)
  - 월요일 휴관,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라.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8조)
- 바.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전시관 내 행위제한 규정 삭제(안 제9조, 제13조)
- 사. 체험프로그램 운영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지침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6. 7. . ~ 8.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체험시설 이용료”란 전시관내 호랑이라이더관, 서클영상관, 곤충온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중 “159-9”를 “151”로 한다.

제5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제7조의 제목 “(입장료 등)”을 “(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장료”를 “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장료”를 “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로 한다.

제8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입장료”를 “전시관 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보수 하는 경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비 및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체험비 및 재료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계좌입금, 현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④ 체험비 및 재료비는 참여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제14조의3(체험비·재료비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비·재료비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프로그램 참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별표 1,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입 장 료(제7조관련)

구분	입장료(관람료)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 인	단체	
전 시 관	2,000	1,500	1,500	1,000	1,000	500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체 : 20명 이상

### 체험시설이용료(제7조관련)

구분	시설이용료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 인	단체	
호랑이 라이더관	1,000	500	1,000	500	1,000	500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체 : 20명 이상
서클영상관	2,000	1,500	2,000	1,500	1,500	1,000	
곤충온실	1,000	500	1,000	500	1,000	500	

### 통합입장료(제7조관련)

구분	통합입장료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 인	단체	
통합입장료	5,000	3,000	4,000	2,000	3,000	2,000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체 : 20명 이상

※통합입장료 : 전시관과 체험시설 3종을 이용할 경우 할인된 입장료임.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제7조 관련)

1. 전시관

편 철 부 분	NO. _____  전시관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전시관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0cm	20cm
6cm	6cm	12cm

이 용 권 (제7조 관련)

2. 호랑이 라이더관

편 철 부 분	NO. _____  호랑이 라이더관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 1,000/ " 5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 1,000/ " 5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0cm	20cm
6cm	6cm	12cm

## 이 용 권 (제7조 관련)

### 3.서클 영상관

20cm							
6cm 편 철 부 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NO. _____             서클 영상관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2,000/ " 1,500)            ·어린이( " 1,500/ " 1,000)            년 월 일             남원시장         </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절 취 선</td> <td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2,000/ " 1,500)            ·어린이( " 1,500/ " 1,0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cm</td> <td style="text-align: center;">6cm</td> <td style="text-align: center;">12cm</td> </tr> </table>	NO. _____  서클 영상관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2,000/ " 1,500) ·어린이( " 1,500/ " 1,000) 년 월 일  남원시장	절 취 선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2,000/ " 1,500) ·어린이( " 1,500/ " 1,0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cm	6cm	12cm
NO. _____  서클 영상관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2,000/ " 1,500) ·어린이( " 1,500/ " 1,000) 년 월 일  남원시장	절 취 선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2,000/ " 1,500) ·어린이( " 1,500/ " 1,0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cm	6cm	12cm					

## 이 용 권 (제7조 관련)

### 4. 곤충온실

20cm							
6cm 편 철 부 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NO. _____             곤충온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 1,000/ " 5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절 취 선</td> <td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 1,000/ " 5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cm</td> <td style="text-align: center;">6cm</td> <td style="text-align: center;">12cm</td> </tr> </table>	NO. _____  곤충온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 1,000/ " 5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절 취 선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 1,000/ " 5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cm	6cm	12cm
NO. _____  곤충온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 1,000/ " 5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절 취 선	입장권 NO. _____  (대표사진)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 1,000/ " 5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cm	6cm	12cm					

## 입 장 권(제7조 관련)

### 5. 통합입장권

	20cm	
편 철 부 분  6cm	NO. _____	전시관 입장권 NO. _____
	전시관 입장권(보관용)	(대표사진)
	·어 른(개인5,000/단체 3,000)	·어 른(개인5,000/단체 3,000)
	·청소년( " 4,000/ " 2,000)	·청소년( " 4,000/ " 2,000)
	·어린이( " 3,000/ " 2,000)	·어린이( " 3,000/ " 2,000)
	년 월 일	년 월 일
	남원시장	남원시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2cm	6cm	12cm

[별표 3]

### 체험비 및 재료비(제14조의2 관련)

(1명 1회 기준)

구 분	금 액	비 고
체험비 및 재료비	실비	

※ 1회 체험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함.

※ 프로그램 공고시 체험비 및 재료비 공지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6. (생략)</p> <p>제3조(위치) 전시관은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9-9에 둔다.</p> <p>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p> <p>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월요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u></p> <p>2. (생략)</p> <p>③ (생략)</p> <p>제7조(입장료 등) ① 전시관 입장료는 별표 1로 하고,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p>② 전시관 <u>입장료</u>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체험시설 이용료”란 전시관 내 호랑이라이더관, 서클영상관, 곤충온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3조(위치) ----- ----- 151-----.</p> <p>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u></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입장료, <u>체험시설 이용료</u> 등) ① -- <u>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u>-----.</p> <p>② ----- <u>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u>----- -.</p>

제8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 7. (생략)

<신설>

<신설>

- 8. (생략)

- 9. (생략)

- 10. (생략)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전시관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 3.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 5.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입장료 면제)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 10. (현행 제8호와 같음)

- 11. (현행 제9호와 같음)

-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삭제>

② 전시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 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3.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료 등) ①·② (생략)  
<신 설>

<삭 제>

<삭 제>

제10조(시설 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시설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요금표 등의 게시) 시장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사용의 예약 및 반환)

- ① (생략)
- ②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 5. (생략)
- ③ (생략)

제14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요금표 등의 게시) -----  
- 전시관 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  
-----.

제13조(시설사용의 예약 및 반환)

-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 5.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제한) ① -----  
-----  
-----.

- 1. (생략)
- 2. 시설물의 긴급 개선·보수 시

- 3. (생략)
- ② (생략)
- <신설>

<신설>

- 1. (현행과 같음)
-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보수하는 경우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비 및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체험비 및 재료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계좌입금, 현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체험비 및 재료비는 참여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제14조의3(체험비·재료비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비·재료비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체험프로그램 참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

	<p><u>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u> 3. <u>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u> <u>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u></p>
--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남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전시관을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594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시장이 운영 관리 한다.

○ 관련조문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위치)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 (운영 및 위탁)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855백만원

- 인건비 : 248백만원
- 시설유지비(빔 프로젝트 램프 교체) : 412백만원
-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 등) : 250백만원
- 재료비 : 25백만원

○ 연도별 예산

- 2016년 : 777백만원
- 2017년 : 855백만원
- 2018년 : 855백만원
- 2019년 : 855백만원
- 2020년 : 855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 : 시설내 자체수입 285백만원으로 예산확보

※ 시설내 자체수입 ⇒ 입장료 280백만원, 카페테리아 5백만원

2.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16년 : 시비 534백만원
- 2017년 이후 : 시비 570백만원

**4. 그 밖의 사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777	855	855	855	855	4,197	
국 비						0	
도 비						0	
시 비	534	570	570	570	570	2,814	
자체수입(입장료)	238	280	280	280	280	1,358	
기타수입	5	5	5	5	5	25	
세 출	675	855	855	855	855	4,095	
건축시설비						0	
인 건 비	241	248	248	248	248	1,233	
시설유지비	269	412	412	412	412	1,917	
비품 구입 등	165	275	275	275	275	1,26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534	570	570	570	570	2,814
	국비						0
	도비						0
	시비	534	570	570	570	570	2,814
자체 수입	소 계	243	285	285	285	285	1,383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238	280	280	280	280	1,358
	기타수입	5	5	5	5	5	25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남원시공고 제2016 - 942호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 남 원 시 장

###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조례안

#### 1. 폐지이유

-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어 자치단체 예산 평가에서 지방 교부세 확보에 저해요소이며,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짐
-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에 따른 예산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 3. 참고사항

가. 이 폐지 조례안(2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7.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 1. 폐지이유

-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어 자치단체 예산 평가에서 지방교부세 확보에 저해요소이며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짐
-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에 따른 예산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7. . ~ 8.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7.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 1. 폐지이유

-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어 자치단체 예산 평가에서 지방교부세 확보에 저해요소이며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짐
-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에 따른 예산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2. 주요내용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률」 및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7. . ~ 7.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남원시 공고 제2016-952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 남 원 시 장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전라북도가 토탈 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군 간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본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조항 추가(안 제12조제4항 신설)
  -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패스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단, 개소당 2시간 이내)
  -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
-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표(안 별표2)

## 3. 의견 제출

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시설사업소장)

- 우편번호 : 55776 /주소 : 남원시 요천로 1447번지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834),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사업소 지원담당(☎063-620-89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7.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시설사업소장

### 1. 개정이유

- 전라북도가 토탈 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군 간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본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조항 추가(안 제12조제4항 신설)
  -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패스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단, 개소당 2시간 이내)
  -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
-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표(안 별표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7. 22 . ~ 2016. 8. 11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의뢰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광한루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패스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단, 개소당 2시간 이내)
- 2.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관련)

차 종	당 일 주 차	월 주 차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000원	30,000원	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 하여야 한다.
2. 승 합 차			
· 소형버스(15인승 이하)	2,000원	30,000원	
·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4,000원	60,000원	
3. 화 물 차			
· 1톤 이하	2,000원	30,000원	
· 1톤 초과	3,000원	45,000원	

※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시간의 주차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18:30

나) 11월 ~ 3월 08:00 ~ 17:3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차료) ① ~ ③ (생략)  <u>&lt;신 설&gt;</u>	제12조(주차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광한루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u> 1. <u>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패스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            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단, 개소당 2시간            이내)</u> 2. <u>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            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u>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